

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·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17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5. . .

제출자 : 충청북도교육감

□ 개정이유

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그동안 보궐선출 과정에서 나타난 현행 제도의 일부 문제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□ 주요내용

- 가. 주로 자녀의 졸업에 따른 자격상실로 보궐선출이 이루어지는 바, 선출 시기가 동계휴가기간으로 홍보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입생이 입학하기 전으로서 신입생 학부모가 배제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궐선출 기한을 삭제함 (안 제3조)
- 나.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잔여임기가 3월 미만인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, 임기가 너무 짧아 보궐선출에 입후보를 꺼리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를 6월미만 남은 경우로 함(안 제3조)

□ 개정조례안 : 붙임

□ 참고사항

- 신·구문 대비표 : 붙임
- 관계법령 발췌서 : 붙임
- 입법예고 결과 : 제시된 의견 없음

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·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· 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· 운영에관한조례”를 “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·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

제3조제2항중 “궐원된 날부터 20일이내에”를 삭제하고, 동항 단서중 “잔여임기가 3월미만”을 “잔여임기가 6월미만”으로 한다.

제1조중 “초 · 중등교육법”을 “「초 · 중등교육법」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중 “국가공무원법”을 “「국가공무원법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